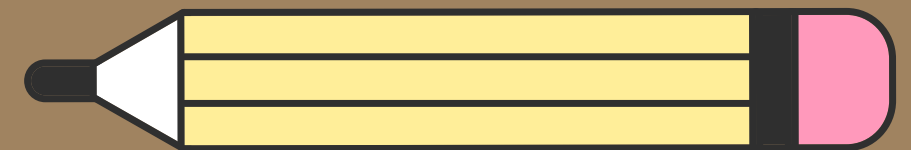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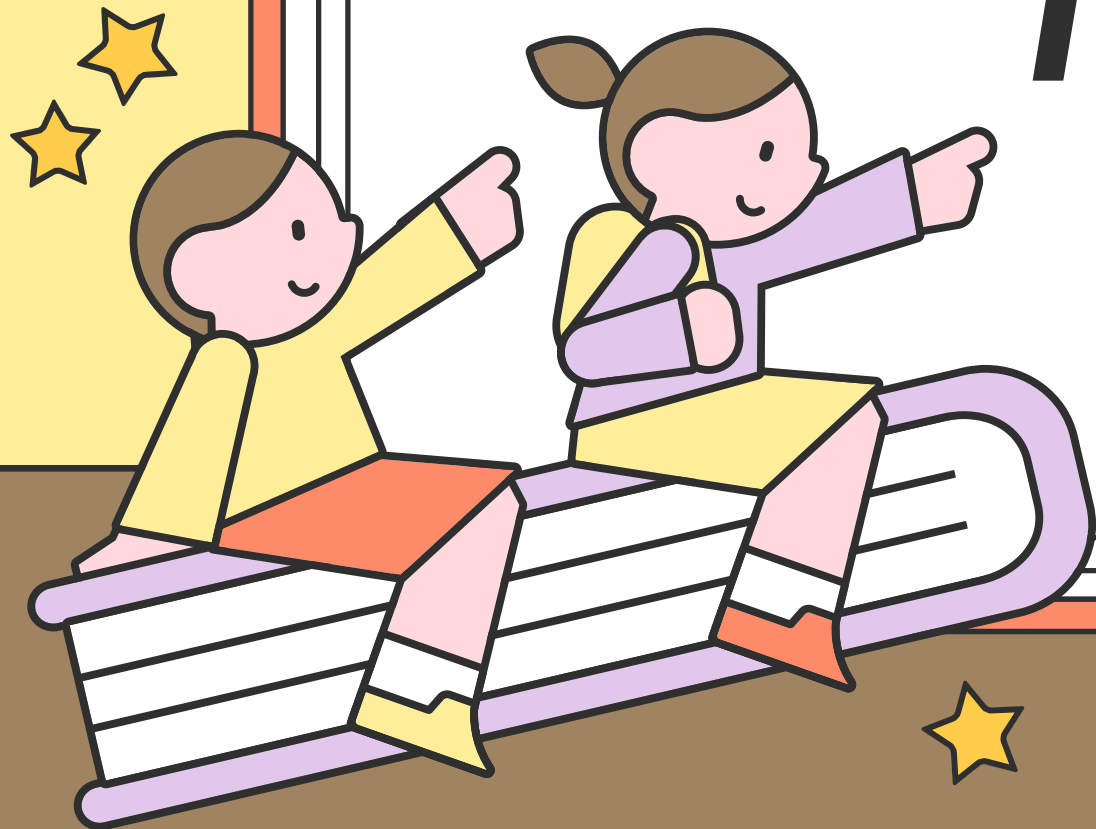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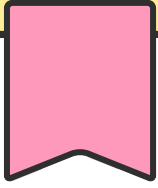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 사업지침

# 개정사항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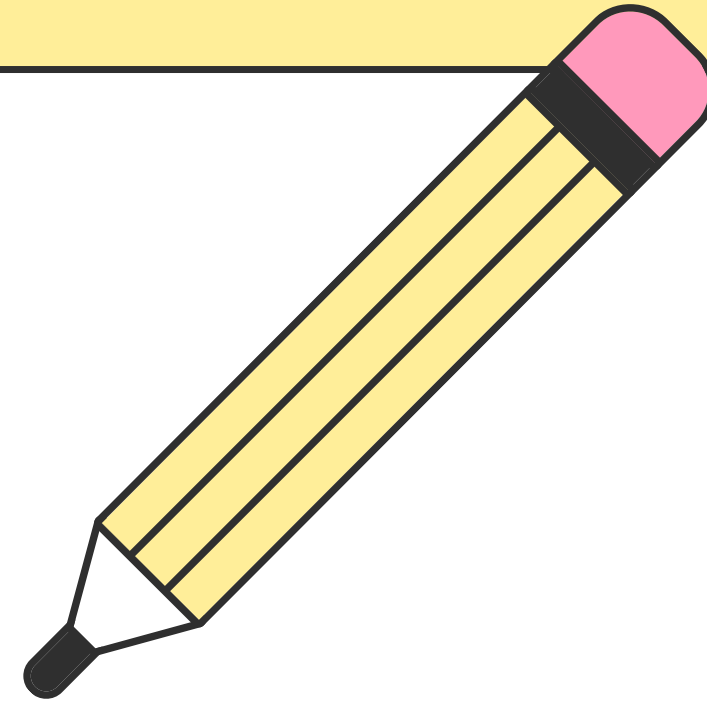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유성 선임





# 목차

CONTENTS



PART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추진 목적

PART 2.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주요 내용

PART 3.



Q&A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 추진 목적

###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 인증관리사업의 운영 기준이 되는 사업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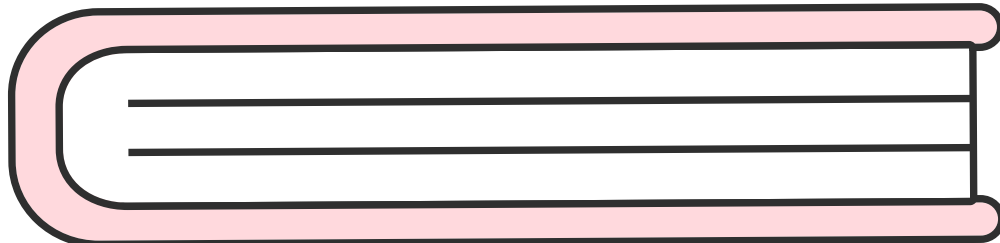
(발간 번호 : 11-1352000-100374-10)

1. 현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지원
2. 지역사회 관리센터 운영 개선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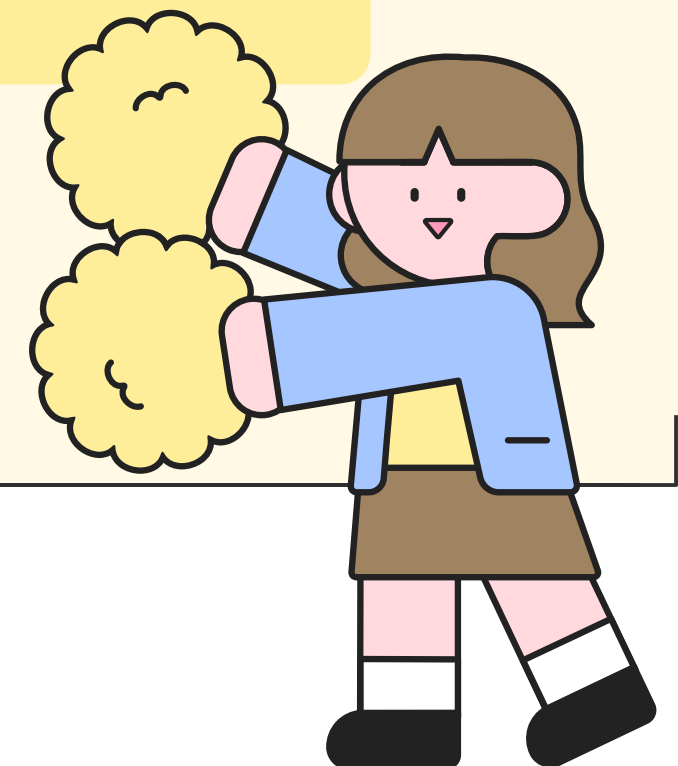


'25. 2월)	사업지침 개정 계획 수립(TF 구성 등)
'25. 4월)	사업지침 개정 협조 요청(중앙관리본부 → 시·도관리본부)
'25.9.22.)	제1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TF회의 개최
'25.10.16.)	제2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TF회의 개최
'25.10.31.)	2025년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 워크숍(지침 개정 논의)
'25.11.7.)	사업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중앙관리본부 → 시·도관리본부)
'25.11.26.)	제3차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TF회의 개최
'25.12.9.)	협의회, 사업지침 개정 승인 요청
'25.12.9.)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통보
'25.12월)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제작 및 배포(1,100부)



# 사업지침 개정 주요 추진 방향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현장 의견 수렴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질의응답(FAQ)' 메뉴 신설





#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표기법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주요 내용



- (당초) 사회복지 자원봉사 → (변경)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 (당초) 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인증 기준 가이드라인 → (변경)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실적 인증 기준
- (당초)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 → (변경)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실적 인증 기준

# 정보 변경 신청서 신설(별지 제11호 서식)

69p	<p>제13조(정보 변경) ① <u>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인증관리요원의 보직 변경, 퇴사 등 사도관리본부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센터는 사도관리본부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u></p>	<p>제13조(정보 변경) ① <u>인증관리요원은 기관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인증관리요원의 자격(활동) 정지복구, 이관, 퇴사와 같은 사도관리본부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사도관리 본부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u></p>	<p>· 절차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신설</p>
42p	<p>4.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7조) 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접근권한 관리 2)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관리요원이 보직변경,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관리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센터는 즉시 해당 인증관리요원의 접근권한 변경을 사도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p> <p>5) 1년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은 사전통보 없이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장기 미접속에 따라 접근권한이 말소된 인증관리요원이 접근권한을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관할 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접근권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4.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제7조) 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접근권한 관리 2)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관리요원이 보직변경,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관리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센터는 즉시 해당 인증관리요원의 접근권한 변경을 사도관리본부에 '정보 변경 신청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요청하여야 한다</p> <p>5) 3개월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은 사전통보 없이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장기 미접속에 따라 접근권한이 말소된 인증관리요원이 접근권한을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관할 관리본부에 '정보 변경 신청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접근권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 반영 (개인정보보호 강화)</p>

# 정보 변경 신청서 신설(별지 제11호 서식)

48p

8. 정보 변경(규정 제13조)  
 정보 변경  
 ■ 인증관리요원은 관리센터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가능  
 - (경로) 인증관리시스템(info.vms.or.kr) 접속 → 관리센터 관리 → 관리센터 → 센터코드 또는 센터명 클릭 → 우측 하단 수정 클릭 → 변경 정보 수정 입력 → 수정 클릭  
 ■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은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인증관리요원의 보직 변경, 퇴사 등 시도관리본부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센터는 시도관리본부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함  
 - (경로)인증관리시스템(info.vms.or.kr) 접속 → 관리센터 관리 → 인증관리 요원 → 상태 : 활동 중 선택 → 검색 클릭 → 퇴사직원 연번 클릭 → 우측 하단 퇴사 신청 클릭 → 퇴사일 입력 → 종사자 인력변동 보고 (공문 사본 또는 퇴사자 건강보험자력득실확인서 등 첨부) \* 사직서 첨부 불가

8. 정보 변경(규정 제13조)  
 정보 변경  
 ■ 인증관리요원은 관리센터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가능  
 < 삭제 >  
 ■ 인증관리요원은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인증관리요원의 자격(활동) 정지복구, 이관, 퇴사와 같은 시도관리본부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신청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시도관리본부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삭제 >

- 문구 수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 반영

# 정보 변

8. 정보 변  
 정보 변  
 인증관  
 이 필요한  
 - (경  
 or.kr) 접  
 → 센터코  
 단 수정  
 수정 클릭  
 관리선  
 업자등록  
 직 변경.  
 경이 필요  
 관리본부  
 요청하여  
 - (경  
 접속 →  
 → 상태 :  
 사직원 연  
 클릭 →  
 보고 (공  
 격득실화

48p

## < 별지 제11호 서식 > (신설)

# 정보 변경 신청서

관리센터명						
담당자	연락처					
관리센터 정보 변경 신청	구분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변경 전      변경 후		제출서류	
	기관명 변경 신청		○○복지관	▲▲복지관	1. 신청서	
	고유번호 변경 신청		123-45-67890	987-65-43210	2. 고유번호증 (변경 후)	
인증관리 요원 정보 변경 신청	구분	성명	연번	사유	신청일자	제출서류
	자격 (활동)	홍00		(예시) 육아휴직	2026.0.00.(목)	1. 신청서
	정지 자격 (활동)	홍00		(예시) 육아휴직 복귀	2026.0.00.(목)	1. 신청서 2. 4대사회보험서류
	구분	성명	연번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변경 전      변경 후		제출서류
	이관	홍00		○○복지관	▲▲복지관	1. 신청서 2. 4대사회보험서류
	구분	성명	연번	퇴사일자		제출서류
퇴사	홍00		2025.2.9.(화)		1. 신청서	
참고 사항	○ [4대 사회보험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다운 경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a href="https://www.4insure.or.kr">https://www.4insure.or.kr</a> ) 홈페이지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 → 증명서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기타 개인정보 취급사항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사항 확인 → 확인자 확인 및 근무중인 사업장 선택 → 신청 클릭 → 세로그인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 변환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기관명: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00시(도)사회복지협의회 귀중

# 호 서식)

정보 변경

- 문구 수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 반영

번호 (사  
 원의 자  
 같은 사  
 한 경우,  
 11호 서  
 당 정보

## 인증관리요원 자격 제한

71p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격 제한) ③ 봉사 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 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1년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항은 소속 관리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격 제한) ③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 2회 이상 연속 발생 시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3개월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접근권한을 회수한다. 장기 미접속에 따라 접근권한이 말소된 인증관리요원이 접근권한을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관할 관리본부에 '정보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해 접근권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항은 소속 관리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자격 제한 상세화

# 실비 지급 및 활동비 지원

다. 실비 지급 및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시간 인증 등은 자원봉사 활성화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  
 < 신설 >

56p

< 신설 >

다. 실비 지급 및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시간 인증 등은 자원봉사 활성화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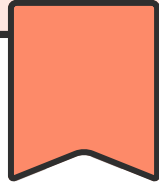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및 활동비는 기관의 자량에 따라 교통비, 식사비 등을 포함하며,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적용 최저 임금의 1/2이하로 시간당 지급하는 것을 권장

\*\*\*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봉사활동은 실적 인증 불가

· 내용 명확화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증 기준

101p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KO)</u></li> <li>- <u>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참여한 본인에 한해 4시간 적용</u></li> <li>• <u>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참여자 모집기관(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동의서 서명을 완료하고 데이터 및 검체를 제공한 자에 한함</u></li> </ul>	· 자원봉사 시간 인정 근거 마련
101p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기가구 발굴 활동</u></li> <li>-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전기 검침원 아·통장 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유관자의 발굴 1건당* 자원봉사시간 최대 4시간 인정 가능</u></li> <li>*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를 통해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 등</li> </ul>	· 자원봉사 시간 인정 근거 마련



②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인증 기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관리센터 소속 직원(인증관리요원 여부 상관없음)의 소속 근무지에서 시간외근무·휴일 근무 또는 봉사활동은 인증 불가  
 ■ 급여를 받지 않고 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근로를 한 경우(무급 근로 시)  
 ■ 회장 등 단체 대표자(임원)의 단체유지 활동\* 시간은 무급이라도 인증 불가  
 \* 단체 운영 지속을 위한 각종 부가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외한 일상적인 회의, 관리, 기타 행정업무를 포함(단체원 모집·관리, 단체 홍보, 각종 회의 등)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공익적인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은 실적 인증 가능  
 ■ 대표자(임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준비 등을 위한 단체 유지 활동에 참여, 자원봉사 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을 수행한 경우 인증 가능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 신설 >  
 ■ 기업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근무 시간 중 봉사활동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인증 가능(비영리적 활동에 한함)

아동·청소년(학생 등) 자원봉사활동  
 < 신설 >

②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인증 기준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관리센터 소속 직원(인증관리요원 여부 상관없음)의 소속 근무지에서 시간외근무·휴일 근무 또는 봉사활동은 인증 불가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기업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등 해당  
 ■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기업 관리센터 소속 직원(인증관리요원 제외)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한 봉사활동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인증 가능(비영리적 활동에 한함)

아동·청소년(학생 등) 자원봉사활동  
 - 단,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 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증 불가

·문구 수정  
 ·인증기준과 내용 삭제 상이한

·대상 명확화 및 문구 수정

·내용 추가

## 주요 질의응답 FAQ

### □ 봉사활동 시간 인증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증 기준) 1회 8시간 초과 실적 입력은 제한되나요?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로 봉사활동한 시간에 한해 인증

- (봉사활동실적 미입력 패널티) 인증관리요원이 30일 이내 봉사 실적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 인증관리요원 자격 일시 제한이 바로 적용되나요?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활동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에 따라 인증관리요원은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 제16조(인증관리요원 자격 제한) 제3항에 따라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 2회 이상 연속 발생 시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필히, 인증관리 요원은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30일 이내 입력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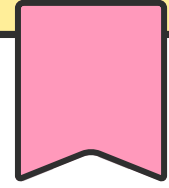


## 주요 질의응답 FAQ

### □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종사자의 봉사활동

-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가 아닌 타 직렬의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원을 했을 때 봉사활동실적 등록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근무가 끝난 후 복지관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바자회 등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등)

- 관리센터 소속 직원(인증관리요원 여부 상관없음)의 소속 근무지에서 시간외근무·휴일 근무 또는 봉사활동은 인증 불가



# Q&A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유성 선임